

사고 보상과정에서 나타난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이진영 · 김경미 · 최윤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Gender Inequality in Compensation for Accident of Female Farmer

Jin Young Lee · Gyung Mee Gim · Yoon Ji Choi

Researcher,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This study reported on the cases about gender inequality in agriculture. Generally women have experienced something in vague situation as unequal to men in rural and agriculture. Despite of some women's have been complaining about this problem, it is not easy why and how many times they have been suffering. In this report, to get the information of gender inequality in agricultural laws and policies, the data was gathered by two steps. The first step, 175 cases into nine types was collected from leaders of several women farmer's associations, and after that, 60 cases selected to be interviewed by a specialist panel. The second step, it was analyzed the interviewed 60 cases based on real conditions compared with laws of items of policies. Among the cases, it was analyzed 8 rural women's who had been experienced to receive the inappropriate compensation in an unexpected accidents. From these cases, it was drew up some suggestions as follows; to make a rule to certify of the identity of woman farmer, and to build in a monitoring system of gender equality in agriculture.

주요어: 여성농업인, 농촌여성, 사해보상, 성불평등

Key words: female farmer, rural women, compensation for accident, gender inequality

I. 서론

최근 WTO, 한·미 FTA 등으로 이어지는 개방화 물결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로 인식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읍·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평균 18.6%,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가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2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농촌 거주 젊은 층도 진학 및 취업으로 도시로 흘러가고

있다. 영세·고령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규 진입농가는 절대적으로 희박함에서 오는 농업인력 구조의 취약성은 과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김경미, 2006). 그러면서도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도 한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그러하며, 또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이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가라는 가구 속에 묻힌 복지의 수혜자이거나 경영주로

대표되는 남성의 그들에 가려진 보조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김경미, 2004). 이런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으며,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농사일을 하는 93.3%의 여성 중 82% 이상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 지위에 속하지만, 실제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상태여서 법적 농업인 지위가 보장되지 못한다.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상·재해 보상이나 법률분쟁 시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농업종사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증명할 장치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기인한다(김경미, 2004). 그러나 이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연구 및 학계의 문제제기도 활발하지 못하다. 농업인의 불평등 문제 유형이나 사례에 관한 축적된 보고 및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례가 인용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상 판례에서는 개인의 역할과 노동형태 증명자료를 적용하고, 부족 시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준용하지만 농업부문 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적용이 어렵다. 보상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합리한 보상을 받은 농업인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합의함으로써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얼마나 그러한 사례가 있는 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고 관련 연구들에서도 조사한 자료들이 개별 보고서에 목적에 따라 실릴 뿐이므로 적절하게 자료로 구축되어 정책이나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끌어내는 데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¹⁾.

1)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2003년 11월에 여성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 불평등 경험 사례 중에서 특히 사고보상 과정에서 경험한 불평등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되는 현행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분석하여 개별 사례들을 체계적인 정책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의 초점이 명확하도록 불평등 유형 가운데 교통사고 및 농작업 사고 등에 대한 보상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란, 김경미(2004) 및 이진영 등(2005)에 따라서 농업농촌기본법 상 ‘농업인’ 정의에 해당하는 농업인, 즉 농사를 짓는 혹은 생산노동으로서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사고보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문제를 보는 것은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곧 직업을 가장 우선하여 일실이익 등을 판정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수준을 가장 뚜렷하게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여성의 농업종사는 부부의 협력의무로서 가사노동 능력 보상에 준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할 만한 명확한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사고보상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불평등 문제²⁾들로 정의한다.

농업인 대표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 발굴의 필요성과 의의, 접근방법 및 사례 발굴 기준과 유형 분류 등에 대하여 사전 논의가 있었다. 또한 협의회에서 도출된 사례 유형 분류 기준은 본 연구에서 간접사례를 수집하는 조사도구에 활용된 바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현황

통계청(1990; 2000)의 농업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농업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 49.9%에서 2000년 50.9%로 증가하였고, 농업기

본통계조사 결과 15세 이상 농가인구의 농업종사자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2004년에는 53.0%에 이르렀다(통계청, 2004).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며, 여성의 농업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남성은 11.5%, 여성은 26.7%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업이 여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 변화 (199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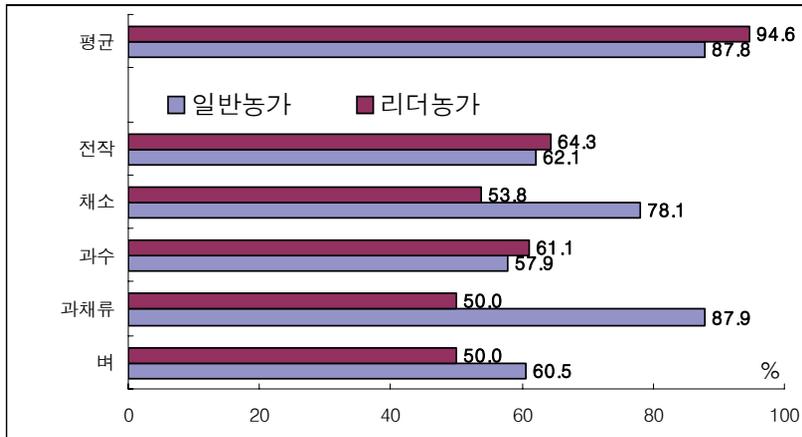
구 분	1990	2004	여성비중 증감률 (2004 / 1990)
농가인구	50.8	51.4	0.6
15세 이상 농가인구	51.2	52.1	0.9
농업주종사자	48.3	53.0	4.7

(단위: %)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1990) 및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2004)

농가의 영농유형이 채소, 과일 등 여성 노동력이 주로 요구되는 작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보다는 농외수입이 더 많은 2종 겸업농가가 늘고 있다(통계청, 2004)는 것도 여성 노동력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김경미(2004)의 연구를 보면, 실제로 농가의 가족 노동력 중 부부의 노동력에 농사일을 의

존하는 비율이 87.8%에 이르고 있으며, 벼농사는 60.5%인데 비해 시설 재배 중 과채류는 87.9%이고, 노지채소도 78.1%이다. 이는 작목별로 여성의 노동 분담률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필요적임을 잘 보여준다(김경미, 2004).



<그림 1> 농가의 부부노동력 의존도

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문제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역할에 비하여 직업인으로서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여 세대주인 남성경영주의 보조자로 간주될 뿐,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농업에 종사함에도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 및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절반이상의 농업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한 질 좋은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가 취약해지며,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인을 정의할 때 준용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상의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조항을 보면,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기준에 포함하는 경우 농업인이라고 인정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상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결국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업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농업인 정의 기준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호(2004)의 ‘농업인 정의’ 조정 방향과 조정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최근의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경미(2005a)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의 기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용이성 때문에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제외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기준의 경우 2000년 농업총조사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미만 농가가 22%를 차지하며, 영세농이 점차 제외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90일 이상의 입증방식에 어려움이 있다(송양호, 2004). 현재 총 43개 법령 218개 조항에서 기본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어, 농업인 정의 문제에 대한 많은 지적에도 지금까지 논란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농업인이 농업인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려면, 대개 농지소유와 농산물판매대금 통장명의로 인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소유 비율은 저조하며, 농산물 판매대금도 대부분이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므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독립적인 신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농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93.3%에 이르지만, 농업종사 사실 인증 절차의 미비로 농업인 인정이 어려우며, 실제 11% 정도만이 농업종사 사실 증명이 가능하다(김경미 등, 2003; 김경미, 2005a).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³⁾한 바 있다. 결정문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 황○○씨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 면직 후 13년 6개월간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

2) 이 연구에서 불평등 사례는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농촌에서 경험하는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불평등하다고 여기는지를 주로 다루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인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판단으로 불평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2005년 9월 28일

후 2003.3.1. 다시 교사로 복직된 여성이다. 복직 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획정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에 의거 진정한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이는 남성을 가장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문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농업종사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중립적인 법조항이더라도 실제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별적 조항이라고 인정한 점과 농업에 실제 종사하면서도 농지명의, 농산물 거래통장명의 등을 본인 이름으로 확보하지 못한 가족종사자들이 농지소유나 수입에 근거하지 않고도 실제 노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농업인’의 규정에는 가족종사자 등 공동경영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200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서 남자경영주가 83.8%이고 16.1%의 여성만이 경영주로 분류되었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에 있어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으면 일반 가정주부(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보상수준이 낮게 측정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 및 상재해 보상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은 1960년대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여 사회전반에 인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가정학에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주부들의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가사작업의 간소화를 위한 실험연구에 치중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주체를 더욱 세분화 하고 정교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전을 보여왔다. 더 나아가서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가정관리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노동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가정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간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외숙, 이기춘, 1988; 유소이, 2003)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은 물론 농업노동까지 참여하여 있으며,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적절한 임금기준 설정이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의미는 여성농업인이 사고 보상 등의 기준 적용에 있어,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가주부 즉 농촌의 가정주부로서 농가의 가사노동에만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고, 이로 인해 농업노동에 참여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경우 사고 보상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용 가사노동자 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도시의 가정주부보다도 임금수준을 낮게 평가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 곤란한 것은 여성농업인들 대다수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을 입증할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쉽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는 지역단위 통용임금수준에 농림어업숙련자에 대한 임금통계자료를 통계청,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에 준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농업 또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체 임금수준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최윤지·유소이(2003)는 이와 같은 여성농업

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종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및 shadow wage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 및 농업노동의 기여도를 측정하였다<표 2>.

<표 2>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액(4)5)

(단위: 원)

평가방법	산출기준임금률	평가액			소득
		일별	월별	연별	기여도(%)
종합적 대체비용법	지역노임 - 주부대체임금 I	62,983	1,914,672	22,976,062	21.90
	농업숙련자노임 - 주부대체임금 I	47,857	1,454,865	17,458,386	16.64
	지역노임 - 주부대체임금 II	71,148	2,162,908	25,954,897	24.74
	농업숙련자노임 - 주부대체임금 II	56,023	1,703,102	20,437,221	19.48
전문가 대체비용법	지역노임 - 가사작업 해당임금	82,542	2,509,264	30,111,165	28.70
	농어숙련자 노임 - 가사작업 해당임금	47,143	1,433,148	17,197,778	16.39
기회비용법	지역노임	69,978	2,127,335	25,528,020	24.33
	농어숙련자노임(여성)	41,833	1,271,746	15,260,952	14.55
shadow wage 추정법	shadow wage	156,150	4,746,985	56,963,821	54.30

- 4)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노동의 경우 지역노임, 숙련노임, 추정된 shadow wage (한계생산물가치)를, 가사노동의 경우 대체임금 I 과 II, 가사작업임금, 추정된 shadow wage(유보임금)를 적용하였음. 농업노동가치평가에 사용된 임금자료 중 지역노임은 직접조사(5,712.5원 / 일)로 수집하였으며, 숙련노임은 노동부 자료(3,415원 / 시간)를, shadow wage는 농업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14,231.43원 / 시간)를 추정하여 사용하였음. 가사노동가치평가에 사용된 임금자료 중 대체임금 I 과 II는 2가지 유형(4,478원 / 시간, 5,919원 / 시간)으로 추계된 시간당 주부대체비용을, 가사작업임금은 노동부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시간당 평균임금(김준영, 2001)을, shadow wage는 주부의 유보임금(11,022.46원 / 시간)을 추정하여 적용하였음. 가사노동의 유형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가정관리부문은 식사준비 및 설거지, 간식 및 저장식품만들기,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집안청소 및 기타, 집수리, 시장보기, 가게부정리, 가정계획, 기타 가사일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각각 4,478원, 3,298원, 3,593원, 3,996원, 4,944원, 4,478원, 7,330원, 10,483원, 4,478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였으며, 가족보살피기 부문에서는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배우자 및 부모보살피기 등의 영역에 대하여 각각 8,398원, 8,398원, 7,022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였음.
- 5) 월별 평가액은 일일 노동가치에 30.4일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국민계정내 가사노동 가치평가지 월별 가치평가지 GDP와의 비교를 위해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눈 30.4일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액 측정 결과 <표 2>의 평가액과 같이 일별 최저 41천원에서 최고 15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출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환산한다면, 상·재해 시 관행적으로 보상받던 것에 비하여 1.2-1.5 배 이상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지(2003)는 부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농업소득 기여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장미 농가 남편의 경우 87%(남편을 100%라고 했을 때 여성의 기여도), 시설딸기 농가의 남편은 80.2%, 시설오이 농가는 78.9, 사과농가 65.8, 느타리버섯 농가의 남편은 부인의 기여도가 57.5%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인의 경우 자신의 농업소득 기여 정도에 대하여 시설딸기 농가의 경우 101.1% (남편의 농업소득 기여도를 100%라고 했을 경우), 장미농가 99.3, 사과농가 93.5, 시설오이 농가의 경우 87.3%라고 하였다. 시설딸기 농가의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소득에 있어서 남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이 농가 소득에 기여도가 남편이 인식하는 것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보험 판정 및 실질적으로 여성의 노동가치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 농촌의 주부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가의 주부로서 가사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촌지역 가사도우미 수준인 일용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어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 또한 매우 미흡하다. 2004년 12월 현재 여성의 농촌 일용임금⁶⁾은 39,839원으로 월 25일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여성의 월 소득은 995천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도시 가정주부⁷⁾ 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성농업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은 23-25천원 수준에 그친다(이진영 외, 2005).

Ⅲ. 연구방법

농업인의 보상 판례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검색하고 킹스필스, LX 등 판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인 전반에 걸쳐 검색을 하였으나, 판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문제에 관한 사례들이 전국 각지에 산포해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보방식을 이용하여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3년부터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와 경험 발굴을 위한 기본원칙과 필요성 확인, 사례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들이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9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센터 등 7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동시에 관련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전화나 이메일 접수 형태로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도출되었던 사례유형별 분류를 기준으로 조사표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개발한 조사도구의 사례유형은 ① 교통사고 시 보상경험 ② 농작업 사고 시 보상경험 ③ 질병 보상경험 ④ 정책자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작목반이나 협동조합 가입 및 활동시 문제 ⑥ 토지나 주택등 여성명의로 이전시 문제 ⑦ 연금 가입 및 수령 문제 ⑧ 대출의 어려움 ⑨ 기타의 9유형이다.

둘째, 2차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지를 이용한 사례수집 후 ① 교통사고 시 보상경험 ② 농작업 사고 시 보상경험 등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하여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며, 조사할 사례는 전문가 토의⁸⁾를 거쳐 우선적으로

6)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농업노동임금을 발표함. 2004년 12월 현재 남자 일용임금 58,290원
7) 도시 가정주부의 월 소득계산 2004년 9월 현재 52,585원×22일 = 1,156,870원

조사되어야 할 사례를 선정하였다. 면접은 여성 농업인 개인별 1시간 30분~2시간정도 이며, 녹취 후 정밀 분석하였다. 심층조사를 할 때는 가급적 연구원과 여성농업인 단독인터뷰를 시도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있을 경우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면접조사의 주요내용은 면접자의 일반적 현황(농사작목 및 규모, 재산소유, 농사 참여도, 연령 등) 및 불평등 경험담을 비롯하여 사회활동, 가족관계, 자녀문제와 노후대책 등에 대한 면접자의 생각과 의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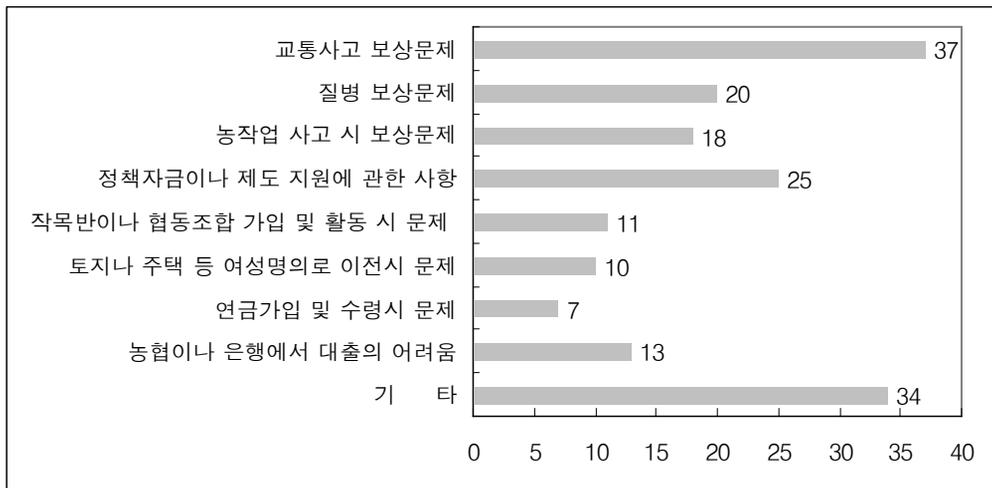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불평등 사례유형 및 분포

농업인단체 지도자 및 지역 활동가 등 7단체

650부 설문조사 및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제보전화,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경험하는 불평등 사례에 대한 경험 혹은 이웃의 경험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2004년 5~6월 사이에 모두 175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본 결과 <그림 2>와 같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불평등 경험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인 <그림 2>는 여성농업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들의 유형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주로 교통사고 후, 농작업 사고 후 보상에 대한 문제들과 정책자금이나 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사례들이 나타났다. 그밖에 질병에 대한 보상사례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 신용접근의 어려움, 협동조합과 작목반 활동 등에서 필요한 조건 충족(이 역시 신용의 일종), 토지와 주택 등의 명의 이전 문제 등이 나타났다.



(단위, 건)

<그림 2> 여성농업인 불평등 경험사례 수집 결과

8) 2004년 7월 8일,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임

간접적으로 수집한 사례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조사 할 사례선정은 간접적으로 조사된 사례 175건을 대상으로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행정전문가, 언론인, 연구자 등 전문가 15명이 모여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례보고 건수, 사례의 중요성 또는 심각성, 사례의 정확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 심층 분석할 사례를 선정하였다. 여성농업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어떤 부분을 불평등하게 생각하는지 사회구조 및 제도상의 문제인지, 개인의 인식에 대한 문제인지는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선정된 사례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심층면접조사 대상 사례의 분포

심층 사례 유형	건수
- 교통사고	6
- 질병 보상	0
- 농작업사고	4
- 정책자금 / 제도지원	13
- 작목반 / 협동조합 활동	1
- 여성 명의 재산 소유	10
- 연금가입 및 수령	1
- 농협 / 은행 대출	2
- 기타: 복지시설(2건), 교육 / 사회활동(8), 문화(10), 고충상담(3), 그 외(5)	28
합 계	65건

심층면접 가운데 사고 등 보상 문제에 대한 사례가 15% 이상 차지하였다. 교통사고나 농작업 사고 후, 보상이나 처리과정에서 경험했던 사례는 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인의 잘못된 정보나 인식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농촌 문화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2. 상재해 보상경험 사례자의 일반적 현황

<표 4>는 심층면접을 하였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으로, 충남 부여의 김○○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한 경우이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2004년 현재)

이름	지 역	연령	농가 주요 작목 및 규모	농사경력
나○○	충북 보은군	51	고추 4천평 양봉 300개	30년이상
김○○	경북 문경시	50	밭 1천평 논 3천평	28년
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김○○	충북 단양군	41	벼 4천평	-
김○○	경기 용인시	47	농장운영(체험 학습장)1만여평	20년이상
양○○	충남 부여군	38	논 2천평 밭 15천평	15년
김○○	충남 부여군	46	임노동자	8년

3. 사례조사 결과: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가. 교통사고 보상 시 농업노동 가치에 대한 보상 미흡

교통사고 보험약관에서 여성농업인 보험보상금 산정은 농촌지역 여성 일용노동 25~33천원 범위이다. 이는 농업인 보상 기준이 아닌 일반 농가 주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인데, 여성이 농업인으로서 경제활동 혹은 가구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상실분에 대한 일실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고보상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보상 처리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거나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법정의 판례나 소비자 구제의 사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직접 부딪힌 농가의 사례를

보면, 경남 김해시의 한우 300두를 키우는 농가의 40대 중반 여성이 축사근방 1km 근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일당을 농촌부부로 간주하여 보상받은 사례('03)가 있으며, 충남 공주시에서 낙농을 하는 여성농업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동안 1일 50천 원씩 주고 대체일꾼을 썼음에도 본인은 1일 27천원 수준에서 보상받은 사례('03)9)가 있다.

공주시의 사례는 본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보상이 부적절하게 평가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이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본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업부분 임금노동자로서 사고에 대한 일실수익이 부적절하게 평가됨을 호소하고 있다.

<부여 김○○> “한 3-4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 농가 여성들 21천원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농사는 안 지어요. 농사는 안 짓는데 그냥 농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어울려서 저는 일꾼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간다는 것이지.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부로 기준을 해서 하루 일당 21천원 기준을 했었거든요. 내가 짐승 키운다고 했거든. 개하고 닭,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짐승 다 죽는다고 그것까지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부여 김○○ 사례의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연간 일정 일수에 농업에 종사한다면, 법적 농업인 기준(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종사사실 증명방법과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농업인 지위를 부여해 줄 만한 기준이 없다. 이런 경우 상재해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9) 두 사례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여성농업인연구팀에게 여성농업인 교통사고 후 보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의뢰한 내용이다.

반면에 본인의 노동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상액을 추가로 더 요구하여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보은 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남편과 함께 입원했다. 남편은 2주, 나는 3주 진단이 나왔으나 3일 입원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했거든. 처음에는 남편은 40만원, 나는 60만원 준다고 했는데(일당 3만원 정도에 해당), 남편은 다시 조정해서 60만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통원치료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억울했지. 그것 때문에 몇 달 고생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어. 그래서 다시 150만원을 요구했고, 그 쪽에서 합의해줘서 받았지. 뭐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때 일 못한 것대로 치면 3~4백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냥 그거라도 받으면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했었던 거지.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많이 아파.”

여성농업인이 교통사고 보상 시 부딪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손실된 자신의 노동가치 기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다. 자신을 직업인으로 생각하며 보상처리 과정에 개입하기 보다는 보험회사 측에서 처리해 준 대로 따른다. 용인 김○○의 교통사고 경험에서 여성농업인의 일반적인 사고 대응 방식이 나타난다.

<용인 김○○> “나 사고, 교통사고 났을 적에 그 연초에, 작년 초인가 1월 달에 그 용인 시내에서 회의 갔다가 오는 길에 저기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화물차에 건축, 그 철로된 건축자재를 묶질 않고선 이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바로 앞바퀴에 떨어져 가지고 하마터면 이게……(중략)……내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쪽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처리는 다되었어요. 그리고 치료받고 입원하고 그래도 보험에서 보상해주는거 그런것두 시골아줌마들은 제대로 못 받아요. 저도 치료비만 받았어요. 그런거 나도 모르니까 그 치료비만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내 치료비만 받아가지고 치료만 하면 끝이거나 그렇

게 생각을 한다구요. 3일 입원에……얼마 나왔더라……최하보상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나도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죠.”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농협공제¹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례의 경우 공제가입 당시와 약관이 변경되어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공제금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가입된 상품에 대해 약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고지해야함에도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고, 농협직원이 대개 지역에 거주하는 안면이 있는 사람인지라 인정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를 끝까지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경 김○○> “공제 가입할 때 특약을 넣으면 요런 혜택이 있다고 요고를 남자 얼마, 여자는 얼마, 일인당 얼마 한다고 했는데, 교통재해 사고 나면 20만원 받는다고, 한 달에 1,2000원씩 계속 나갔는데 이거를 사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요거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0만원이란 건 없어졌어요. 저녁에 운동하고 자전거로 오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6주나 진단 나왔어요. 팔을 다쳤는데 뼈가 이상해서 쇠까지 박았거든요. 교정술까지 했는데 일인당 20만이란 게 싹 없어졌더라고.……(중략)……담당자 얘기가 요건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말로만 그렇지, (농협보험) 실지로 혜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두 이 보험 이래하고는

10) 농협에서는 농작업 재해, 일반 재해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종합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50%)을 받아 농업인 대상으로 공제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민영보험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반면 농협의 공제사업은 농림부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전문가에 의한 감독시스템이 문제가 되어 2004년 초 금융감독원은 농림부에 감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그 성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머니투데이, 2004.8.26. 유사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당시에는 내 자신도 너무 초라하고 저거 보험 청구하러 갈 때 우리주인도 가서 얘기 안 해주지도. 돈 20만원 별거 아니고 몸은 내가 실수로 어떻게 이래 되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그냥 좀 풀자 이런 것이 있더라고. 솔직히 꼬치꼬치 할려고 해도 그런 게 있더라고.”

나. 농작업 사고에 대한 보상 미흡

농업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고 이것을 다루는 농업인의 안전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 시 대비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농협의 농업인안전공제 등으로 국가의 일부 지원이 되나,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 안전대책이 되지 못하며, 국가적으로 이들을 보호해 줄 만한 시스템이 없다. 또 농업인은 자신의 일을 하다 다쳤으니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울주 정○○> “올 3월 하우스에 불이 나서 다 뜯어냈어요. 불날 때 그 불티가 망막에 들어가 망막이 찢어져서. 내가 내일하다 그랬으니, 내 책임도 있지요. 그런 것두 누가 보상해주면 좋지만 그 때는 그런 생각 못했죠.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했죠.”

농업이외의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 중 사고 시에는 보험 수혜를 받는다. 이와 비교했을 때 농업인의 경우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현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시 농작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원인구명이 불분명하여 보상처리 시 논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농업 참여와 함께 농기계를 다루는 것 또한 여성의 몫이 되어가고 있으나, 농가의 경제구조상 부부보다는 남편위주로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따라서 사고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단양 김○○> “99년 3~5월 모심기 전 트랙

터 운전 중에 모자가 팔랑거리는 부분이 바람에 시야를 가려서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거든. 왼쪽 어깨 상한신경선이 마비되었다고 했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를 만에 재검 받았을 당시에는 신경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놀려 있다고 했지. 그래서 2개월간 입원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1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씩 병원을 통원하며 일 년간 치료를 받았지. 당시 가입한 보험도 없었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어. 의료보험이 되어 있어도 경비, 치료비, 약값 등으로 천만원정도 소요되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어.”

또한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조건이 불안정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상수준을 판정할 때는 여성농업인이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임과 동시에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보장성이 약하고 사고 등에 대한 보장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부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여 양○○> 우리 농민회원 중에 한사람이 원래 농사짓는 사람인데 2001년에 농사 줄이고 노가다(일11)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산재적용을 받았대요. 만약 이 사람이 농사짓다가 사고 났으면 보상 받았겠어요?

부여 양○○의 사례에서 농업부문 종사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다.

4. 불평등 사례 조사기준 항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2는 사례 수집 및 자료 조사를 통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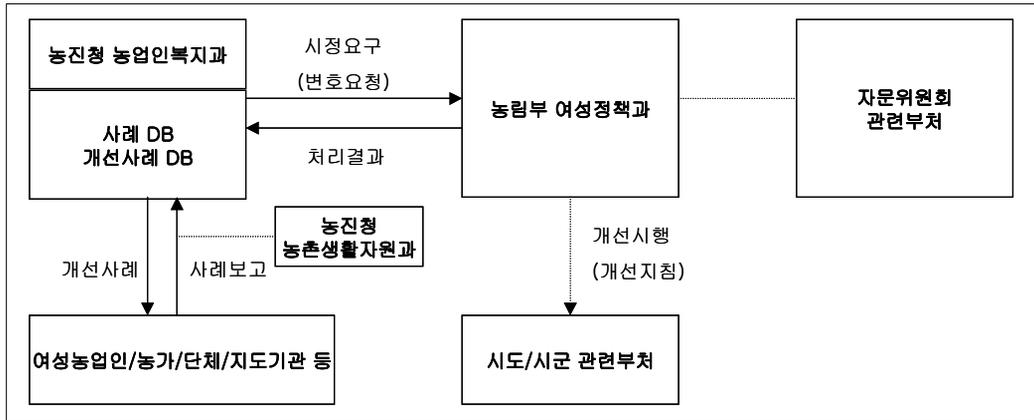
11) 건설업종인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는 일 혹은 육체노동일을 정하는 시쳇말이나 현실감을 살리기 위하여 표준어로 고치지 않고 응답자 표현을 그대로 실었다.

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 이 조사표에 기록한 내용들은 앞으로 판례가 잘 형성되지 않고 각 연구자별로 사례조사를 통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고 사장되어 가는 많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굴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여성농업인 관련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고유번호			
이 름		나 이	
주 소		연락처	
농업현황	주요 작목	규 모	
	1.		
	2.		
사례유형			
사례기술			

<그림 2>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 DB화를 위한 조사기준 항목

<그림 3>은 여성농업인의 불평등 사례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여성농업인 사례들이 현장 조사와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서 현행 제도와 정책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활동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림 3>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 모니터링 시스템

V. 결 론

최근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복지실태 및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에 비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농촌 집단내에서 여성농업인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산포되어 있는 문제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문제유형과 특성에 관한 분포를 찾기 위하여 사례 제보 방식을 취하였다. 절반의 농업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문제를 접근하였다.

제보를 통해 수집한 사례는 총 175건이며,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심층사례 분석 대상 60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 인터뷰 및 녹취록 분석을 통해 사례의 특성과 원인,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이 경험한 사례는 9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나 질병, 농작업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는 8명의 심층 사례를 이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통사고 및 농작업 사고 시 보험 등 보상관계와 처리과정 등에서 농업종사자 여성의 법적 지위의 불인정

과 농업노동 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 절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여성이 농업노동 등을 통해 가구소득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기 권리 주장 등이 부족하여 쉽게 합의함으로써 관행적으로 보상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보상을 확보한 경우도 있어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인정에 대한 제도적 정비뿐 만아니라 의식 교육도 중요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최윤지 등(2004)의 연구결과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노동 가치를 반영하였을 때, 현행보다 최소 1.2배에서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교통사고나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산정시 농업노동 기여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농작업 사고 등에 대한 보상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지만,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여성농업인 사례에 대한 자료는 더 풍부하며, 학술적 의의가 있는 사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농업 및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확보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2001.9).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편람**, 109.
2.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8.20). 국민연금소식: [새소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 향상**.
3. 금융감독위원회. (2004). **표준약관(자동차)**.
4. 김경미, 최윤지, 조옥라, 김문형. (2004).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제도적 지원방안**, 농촌자원개발연구소·공주대학교·농협대학,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제1년차 보고서』, 1-42.
5. 김경미, 김영, 이봉훈, 김상남, 최윤지. (200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여성농업인 참여수준과 정보망**.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4(1), 121-148.
6. 김경미, 조현숙, 최윤지, 박민선, 황수경 등. (2003). **여성의 농업종사 유형 분류 및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생활과학 시험연구사업보고서, 355-382.
7. 김경미. (2004).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여성농업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8. 김경미. (2006). **여성의 농업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방안**.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집. 23-62.
9. 등기닷컴. (2004).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할 경우 채권 대입액의 절약 이외에 좋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http://www.deungi.com>.
10. 머니투데이. (2004.8.26). **유사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moneytoday.co.kr/search/real_search_opennews.htm.
11. 유소이, 최윤지, 조현숙,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대한가정학회지 41(7), 157-168.
12. 이진영, 김경미, 최윤지. (2005). **여성농업인 보상기준 적용을 위한 사례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4년도 농촌자원개발연구, 200-222.
13. 이진영, 김경미, 최윤지, 김정섭. (2005).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증명을 위한 생활일지 개발**. 농촌지도학회지 12(2), 137-150.
14.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15. 최윤지, 김경미, 강경하, 임찬영, 유소이. (2004). **농업소득에서 여성농업인의 기여분 평가와 인정방안**. 한국어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6. 허미영. (2002). **환경농업과 여성노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년 11월 25일 접수, 심사 후 수정보완)